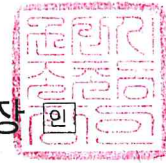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0년 04월 08일

조촌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68-09-27	전라북도 군산시 미장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3-26